

【붙임】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
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8. 7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.
-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법령제명을 어문규범에 맞는 띄어 쓰기로 정비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추가(안 제2조제2항제4호부터 7호까지)

- 변경 : 제109보병연대 1·3대대장 ⇒ 제1670부대 1·3대대장
- 추가 :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, 국가정보원관계관

나. 분야별 담당 간사 변경(안 제2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)

- 예비군담당 간사: 109연대1·3대대 동원장교 ⇒ 예비군담당 간사: 제1670부대 1·3대대 예비군 업무 담당과장
- 작전담당 간사: 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, 제109연대 1·3대대 작전장교 ⇒ 작전담당 간사: 평창경찰서 작전 업무 담당과장, 제1670부대 1·3대대 작전 업무 담당과장
- 정보담당 간사: 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, 제109연대 기무반장 ⇒ 정보담당 간사: 평창경찰서 정보 업무 담당과장

다. 협의회 회의의 구분과 개최시기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조제4항)

- 정기회(분기1회), 임시회(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)
- 의결 정족수(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)

라. 협의회 심의사항 구체화(안 제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)

- 통합방위 대비책,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지원대책,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대책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관계부서 승인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: 2008.5. 1 ~ 5. 22(21일) 특기사항 없음
-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”를 “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4호 “제109보병연대 1·3대대장”을 “제1670부대 1·3대대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제5호”를 “제7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“제5호” 및 제6호”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
6. 국가정보원관계관

제2조제3항제3호 중 “제109연대 1·3대대 동원장교”를 “제1670부대 1·3대대 예비군 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제4호 중 “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, 제109보병연대 1·3대대 작전장교”를 “평창경찰서 작전 업무 담당과장, 제1670부대 1·3대대 작전 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제5호 중 “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, 제109보병연대 기무반장”을 “평창경찰서 정보 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“제4항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조제5항 중 “제5호”를 “제7호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 제3호 ”를 “ 제6호 ”로 하고, 같은 조에 “ 제3호부터 제5호까지 ”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3. 통합방위 대비책

4. 통합방위 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

가.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

나. 통합방위 작전·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·계몽 및 지원대책

5.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·운영 및 지원 대책

가.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에관한 사항

나. 통합방위 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강화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『통합방위법』

제5조 (지역통합방위협의회)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.

□ 『통합방위법 시행령』

제7조 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

- ① 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 제2항의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
 1.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 2.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 3. 국가정보원관계자
 4. 지방검찰청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 5.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 6.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
 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 8. 지방병무관서의 장
 9. 교육감 또는 교육장
 10. 지방의회 의장
 11. 지방소방관서의 장
 12.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
-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합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,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통합방위작전시 차량·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

2. 향토예비군·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·계몽 및 지원대책

3. 취약지역 대비책

4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
⑥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영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
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·관·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<u>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</u> <u>등에관한조례</u>	제명 <u>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</u> <u>등에 관한 조례</u>
제2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 1 ~ 3(내용생략) 4. <u>제109보병연대 1·3대대장</u> 5. <u>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</u>	제2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 1 ~ 3 (현행과 같음) 4. <u>제1670부대 1·3 대대장</u> 5. <u>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</u> 6. <u>국가정보원 관계자</u> 7. <u>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</u>
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, 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,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. 1 ~ 2(내용생략) 3. <u>예비군담당 간사 : 제109연대 1·3</u> <u>대대 동원장교</u> 4. <u>작전담당 간사 : 평창경찰서 정보보안</u> <u>과장, 제109보병연대 1·3대대 작전</u> <u>장교</u> 5. <u>정보담당 간사 : 평창경찰서 정보</u> <u>보안과장, 제109보병연대 기무반장</u>	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, 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,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. 1 ~ 2(내용생략) 3. <u>예비군담당 간사 : 제1670부대 1·3</u> <u>대대 예비군 업무 담당과장</u> 4. <u>작전담당 간사 : 평창경찰서 작전</u> <u>업무 담당과장, 제1670부대 1·3대대</u> <u>작전 업무 담당과장</u> 5. <u>정보담당 간사 : 평창경찰서 정보</u> <u>업무 담당과장</u>
<신설>	④ <u>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로</u> <u>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</u> <u>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</u> <u>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, 협의회 회의</u> <u>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</u> <u>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

현 행	개 정 안
<p>④ 제2항제5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⑤ 제2항제7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
<p>제3조(협의회 심의 사항)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 ~ 2(내용생략)</p> <p>3.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</p>	<p>제3조(협의회 심의 사항)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 ~ 2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통합방위 대비책</u></p> <p>4. <u>통합방위 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</u></p> <p>가. <u>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</u></p> <p>나. <u>통합방위 작전·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·계몽 및 지원대책</u></p> <p>5. <u>국가방위 요소의 육성·운영 및 지원대책</u></p> <p>가. <u>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사항</u></p> <p>나. <u>통합방위 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강화</u></p> <p>6.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